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 민 통 합 위 원 회 의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 수를 39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14.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를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수렴”을 “경청·수렴”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9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제4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국민통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행 확인 요청

제14조 중 “2027년 5월 31일”을 “203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u>우리 사회에</u> <u>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u>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경청과 관용</u> <u>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u> <u>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u> <u>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u> <u>번영을 이루는</u> ----- ----- -----.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u>수렴</u> 및 소통 활성화	7. ----- <u>경청</u> <u>· 수렴</u>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3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 <u>70명</u>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②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1. <u>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u>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신 설>

2.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 제2항제3호-----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2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나.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행 확

2. (생 략)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u>2027</u> <u>년 5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u>인 요청</u> 2. (현행과 같음) 제14조(존속기한) ----- <u>2030년</u> <u>6월 30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2